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. 8. 20 선고 2015가단259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8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2013. 1. 1.부터 위 나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항병호

별지